

『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』 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

의안번호	2465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02. 02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·대행을 추진하는 바,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·대행 추진근거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항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(마케팅 등 지원)

나. 위탁·대행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2) 관내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제공, 통역인력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

다. 위탁·대행 사무 주요 내용

- 1) 대상사업 :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
- 2) 대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6. 12. 31.까지
- 3) 대행기관 : 서울경제진흥원(SBA) G밸리활성화팀



- 4) 대행 사업 내용 :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수행 전반
가) 사업수행, 사업비 관리
나)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
다) 전시회 참가기업 사전컨설팅 및 설명회
라)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(성과공유회)
마) 참여기업 사후관리 등
- 5) 소요예산 : 480,000천원(전액구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항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(마케팅 등 지원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
(구의회 동의)

나. 위탁·대행 사업 세부내용

다. 위탁·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

관 련 근 거

중소기업기본법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관 련 근 거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6조(마케팅 등 지원)

-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 · 홍보하고, 국내 · 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(공사 · 용역)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.

제13조(예산 지원)

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· 중소기업자(소상공인)를 위한 교육비
2. 중소기업의 경영전략,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
3.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 · 외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
4. 산 · 학 · 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관 련 근 거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

제8조(구의회 동의)

- 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 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 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
 6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
- 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·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수탁·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)

-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·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 1.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 2.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
 3. 수탁·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
 4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·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1. 수탁·대행기관의 명칭·소재지
 2. 위탁·대행의 목적
 3. 위탁·대행사무 및 그 내용
 4. 위탁·대행기간

5. 위탁·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
 6. 위탁·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
 7.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
 8. 수탁·대행기관의 의무
 9. 계약의 해제·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
 10.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 11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·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·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·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·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 -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, 위탁사무명, 위탁기간 등을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위탁 · 대행사업 세부내용

사업목적

-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
-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의 실무능력 및 잠재력 향상
- G밸리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
-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

관련근거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3항,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
- 구청장 지시사항(2019.9.2.) 「기업지원에 대한 성과 관리방안 강구」

사업개요

- 해외유망전시회 ‘금천구관’ 단체참가 지원사업

전시회명	상하이 미용박람회	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	미국 라스베가스 무선통신 전시회		
주최/주관	서울경제진흥원, 금천구 ※ 한국무역협회 협업				
분야	뷰티·미용	IT·전기전자	IT·전기전자		
일시	5월중	5월중	10월중		
지원대상	관내 중소기업 6개사	관내 중소기업 6개사	관내 중소기업 6개사		
지원내용	① 부스임차료·장치비 지원 ② 통역비·공동브로슈어·운송비 지원 ③ 사전컨설팅, 사후관리 지원				
2023년 실적	전시회명	지원기업 수	상담건수	상담금액	계약예상액
	홍콩 추계전자박람회	6개사	74건	977,400천원	488,700천원
	오사카 뷰티월드	6개사	76건	793,800천원	396,900천원
	총계	12개사	150건	1,771,200천원	885,600천원
소요예산	480,000천원				

추진방법

○ **금천구 - 서울경제진흥원(SBA) 협업체계 구축**

※ '23. 3. 27. :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협력 및 사업비 사용 관련 '금천구-SBA 공동주관기관' 협약체결

기 관	업 무
금천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기본계획 공동수립 - 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 홍보 - 참여기업 사전 및 사후관리
서울경제진흥원(SB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기본계획 공동수립 - 사업수행, 사업비관리 - 참여기업 모집 · 홍보 및 선정 - 참가기업 사전컨설팅 및 설명회 -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- 참여기업 사전 및 사후관리

대행기관 현황

서울경제진흥원(SBA)

○ **설립목적** : 서울특별시의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, 기업 성장, 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

○ **설립근거**

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
-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

○ **주요사업**

7대 정책과제	글로벌 창업기업 육성	*기업 매출증대 지원 ⇒ 해외판로 지원	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
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	산업거점 활성화	콘텐츠 산업 육성	뷰티 패션 산업 강화

① 트레이드(Trade) 온 운영

- 수출기업 및 바이어 간 '24시간 연중상시' B2B 상담 매칭 지원
- 기업 육성, 역량강화를 위한 '수출유망기업 육성' 및 '교육·세미나'운영

② 해외 협력매장

-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 협력 거점매장 운영
- 현지 시장 반응을 반영한 수출 유망아이템 발굴 및 입점지원
- 입점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온/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

위탁·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·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심의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2024. 1. 29.(월), 14:00
- 장 소 :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(4층)
- 참석위원 : 총5명 (공무원1, 전문가4, 구의원1^{불참})
- 심의안건 :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업 적정성 심의

대행기관	기관 설립목적	사업명	사업내용
안건 1 서울경제진흥원 대행사업	서울시의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,기업성장, 산업육성에 기여	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	해외 유망전시회 단체참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
		해외바이어 초청 G밸리 수출상담회	G밸리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
안건 2 한국디자인 진흥원 대행사업	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디자인 정책 기획,산업연구, 산업육성을 위해 설립	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	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의 디자인 네트워크 및 구축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상 전문적인 디자인 개발지원

○ 의결사항

- 서울경제진흥원 대행사업 적정성 여부
-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행사업 적정성 여부

위탁·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사항

검토기준		부서검토 의견
공공성	◦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	◦ 서울시 및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업추진 시 공익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실행 가능
	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◦ 금천구 사무의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후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가능
	◦ 책임행정의 보장성	◦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의지, 기관의 성과 목표, 금천구와의 업무협약 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신뢰성 확보
전문성	◦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◦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
	◦ 수탁·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◦ 각 해당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, 추진방식에서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높음
효율성	◦ 경제적 효율성	◦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년간의 풍부한 인적·물적자원 및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 제고
	◦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◦ 사업계획, 지원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정성·정량적 평가 지표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측정 가능

검토결과

○ 서울경제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행사업 적정성 여부 : '적정'